

후쿠오카현에서는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.



## 음주운전 통보 메뉴얼

### 1 음주운전이란

-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술이 몸에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.
- 자전거도 차량이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됩니다.
- 벌칙, 처분
 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
  - 운전면허 취소 등

### 2 다음과 같은 사람을 목격했을 때는 110번 신고를 해주십시오.

- 자동차를 운전하고 온 사람 중에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술 냄새가 나는 사람
- 자동차 운전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
-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타려고 하는 사람 등

~ 후쿠오카현에서는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. ~

### 3 110번 신고하기

- ① 전화번호 '110' 을 누르세요.
- ② 경찰관이 질문을 하니까 진정해서 하나씩 대답하세요.

가 차량번호나 특징(색깔, 자동차 이름, 종류 등)

나 운전자의 특징 (성별, 나이, 옷차림 등)

다 상황 (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고 있었다 등)

~일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은 다른 분에게 신고를 의뢰하셔도 됩니다. ~

### 4 협조 부탁

음주운전은 사망사고 등 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.

후쿠오카현에서는 과거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

비참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# 후쿠오카현 경찰